

2026년도 제2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① 일 시: 2026. 1. 21.(수) 14:00~15:50

② 장 소: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③ 참석현황: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6명, 불참 4명

■ 참석위원(16명): 위원장 이준한, 부위원장 서정현, 위원 강희찬, 위원 이영수, 위원 김규원, 위원 성하영, 위원 황병희, 위원 홍진배, 위원 한재길, 위원 김동진, 위원 최수봉, 위원 이충우, 위원 허종완, 위원 권기영, 위원 임영태, 위원 송인석

■ 불참위원(4명): 위원 노지승, 위원 이윤정, 위원 이헌구, 위원 조병관

④ 회의결과(요약)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제2026-02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가결
제2026-03호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제2026-04호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제2026-05호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제2026-06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제2026-0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상근임원 보수 지급 기준 변경안	원안가결
제2026-08호	2025년도 법인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제2026-09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안	원안가결
제2026-10호	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원안가결
제2026-11호	2026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1 제2026-2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보고자: 평생교육원 교학과장]

1. 제안사유

- 가.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원 내 신설된 K-컬처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나. 각종 기재사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운영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담임강사 위촉 대상 및 인센티브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비학위 과정 활성화 및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원의 사업 중“K-컬처센터 운영”추가(제3조)
- 나. 평생교육원의 교수 및 강사 자격의 의미 명확화(제5조 제2항)
 - (기존) 전임교원 → (변경)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다. 인센티브 및 교육지도비 지급대상 확대(제5조 제3항)
 - (기존) 학점은행제 담임강사 → (변경) 학점은행제 및 비학위 과정 담임강사
- 라. 보직명 변경사항 반영(제6조 제3항)
 - (기존) 기획예산처장 → (변경) 기획처장
- 마. 운영위 결원 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 제한 삭제(현행 제6조 제5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한의 필요성 및 실효성 부재
- 바. 운영위 심의사항 중 K-컬처센터 운영 관련사항 추가(개정 제6조 제5항)
- 사. 수료증 서식 내 기관 명칭 중 “부설”삭제(별지 제1호)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평생교육원도 학기제로 운영될 것 같은데 3월 말 정도에 공표되면 학기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소지가 있지 않은지?	▶ 평의원회가 2월의 미개최로 인해서 3월로 미뤄진 사항이고, 학기제를 꼭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2026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을 달아주시면 학기 운영제 하는 데 부담이 없겠습니다.
비전임교원분이 위촉되신다면 이 규정이 공포된 다음에 자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연초로 하시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 지금 부칙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것을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이렇게 부칙을 달아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가결 사항

원안	수정안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2026-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캠퍼스기획안전과장]

1. 제안사유

- 가.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공간관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교육연구위원회 보류사항을 재검토한 후 안건 재상정

2. 주요내용

- 가. 공간사용료 납부방법 중 개인연구비 명칭을 정비하고, 납부 기준 명확화
- 나. 교수 개인에게 부과되는 초과공간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
- 다. 신설 학과(부)의 공간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 라. [별표1] 오기 정정, [별표3, 4] 표 수정 및 문구 삭제
- 마. [별표3] 자연계열(수학과 제외)의 실험실습실 학생1인당 좌석 기준면적 상향 조정(8.16→9.6㎡)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이 감면 조건으로 감면된 것이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인지?	▶ 지금 개정사항은 초과되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 개정 사항임

○ 심의결과: 원안가결

3 제2026-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강사로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보고자: 학사과장]

1. 제안사유

- 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 등 원어강의를 확대코자 함
- 나. 기존 원어강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어강의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하고, 원어강의로 지급 기준 및 대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원어 강의	정의	[신설] 원어강의: 구술의 80% 이상을 원어로 진행하는 수업	제3조제6항
	범위	[변경] 원어: 영어 등 외국어	
원어 강의료	지급기준	[신설] 전임교원 초과강의료(전임/비전임 동일) ※ 40,000원 x 교과목 시수 x 15주 x 0.5 (원어강의료는 추가강의료임)	제8조제2항
	지급대상	[삭제] 외국인 미수강 시 0.25배 지급 [삭제] 외국인 교수의 원어강의로 지급 제한	제6조제4호

※ 원어강의 모니터링 → 강의평가
 (원어강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문항으로 개선 예정)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교원은 원어로만 강의가 가능한데 강의료를 지급하면 한국어로 강의하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 강의료 지급의 목적이 원어 강의를 늘려 외국인학생 및 유학생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임 ▶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경우와 같은 문학 및 어학 강의는 미해당

○ 심의결과: 원안가결

4 제2026-5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교무과장]

1. 제안사유

- 가.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반영
- 나. 2025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정에 따른 연구장려금 개편

2. 주요내용

연번	조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별표1]	봉급표	- 전년대비 3.5% 인상 - 근속가봉 8만2800원 (변경 전 8만원)	- 2026. 1. 1.부 적용
2	제16조	연구장려금	- 정액연구장려금 신설	- 2025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정 이행

※ 인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5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정

〈중앙2025중재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노동쟁의 중재개시사건 【주 문】

1.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매년 연구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 ~ 4. (생략)

○ 심의결과: 원안가결

5 제2026-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교무과장]

1. 제안사유

가. 조교 노조 「임금협약」에 의거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인상률(3.5% 인상) 적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조교 봉급표 개정(전년대비 3.5% 인상)
 - 적용시기 : 2026. 1. 1.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조교 1호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지?	▶ 최저시급보다 높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1 제2026-7호 심의안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상근임원 보수 지급 기준 변경안
 ■ 안건요지 [보고자: 법인법무과장]

1. 제안사유

- 가. 현재 상근임원의 보수는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 나. 이 중 총장의 현행 보수 지급기준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보수 지급 근거를 명확히하여 상근임원의 보수 지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근임원 보수 지급 기준 변경안

구 분	현 행	변경안
총 장 (연 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 + 수당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u>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u>’의 학생정원 1만명 이상 국립대학교 총장 기준 적용 - 수당 : <u>인천대학교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u>에 따라 지급 ※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교원 총장과 외부 초빙 총장의 지급기준 동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 + 수당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u>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u>’에서 비교 1.의 나. 국립대학교 총장 기준 적용 - 수당 : <u>인천대학교 교원 보수 지급기준</u>에 따라 지급 ※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교원 총장과 외부초빙 총장의 지급기준 동일 적용
부총장	부총장은 교원 보수 규정 및 지침 적용 대상으로 별도 보수지급 기준 필요 없음	교원 보수 규정 및 지침 적용

○ 감사 : 변경 없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7 제2026-8호 심의안건: 2025년도 법인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건요지 [보고자: 재정전략과장]

1. 제안사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예산(안)

- 성질별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65,330	265,847	△517	△0.2%
등록금 수입	61,907	62,862	△955	△1.5%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171,915	172,046	△131	△0.1%
전입 및 기부금 수입	2,936	2,390	546	22.8%
교육부대 및 교육외 수입	5,752	5,679	73	1.3%
고정자산 매각수입	60	60	-	0.0%
이월금	13,360	13,360	-	0.0%
수입대체 경비사업	9,400	9,450	△50	△0.5%

나. 세출예산(안)

-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65,330	265,847	△517	△0.2%
인건비	101,540	101,630	△90	△0.1%
관리운영비	11,831	12,094	△263	△2.2%
학사 및 교육운영	46,939	47,171	△232	△0.5%
교육인프라 구축	44,881	44,255	626	1.4%
우수인재 양성	48,068	48,770	△702	△1.4%
재무활동	3,623	3,293	330	10.0%
평생교육지원	668	681	△13	△1.9%
예비비	1,147	1,147	-	0.0%
수입대체 경비사업	6,633	6,806	△173	△2.5%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억가량 편성되는 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금액이며, 집행에 문제 없음.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지?	▶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적립 중이며, 27년부터 11공구 부지 매입 등 건축적립금이 필요한 상황임.

○ 심의결과: 원안가결

8 제2026-9호 심의안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안)

■ 안건요지 [보고자: 기획조정과장]

1.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거하여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성과목표별 주요 추진과제 및 집행예산

가. 대학운영 방향 : 4대 미션, 10대 성과목표, 36개 주요 추진과제

나. 예산 총액 : 금55,687,279천원(금오백오십육억팔천칠백이십칠만구천원)

(단위: 천원)

미션	성과목표	2026년 예산액(안)	주요 추진과제
합 계		55,687,279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통섭형 인재 양성	미래사회 역량중심 융복합 교육 활성화	1,350,304	① 융합자유전공대학 안착화를 통한 학제간 교육 강화 ② 전공의 벽을 넘는 융복합교육 활성화 ③ 학사제도 유연화 ④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융합적 사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3,723,940	① 창의적 문제해결 및 소통역량 강화 ②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③ 국제화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체계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④ 외국인 학생 지원체계 강화
	학생 성공 지원 고도화	3,160,100	①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기반한 지역산업체 진출 지원 ② 취업 준비도별 STAR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 ③ 대학생활 몰입도 및 적응도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④ 수요자 중심 학습체계 강화 ⑤ 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지원 시스템 운영
	소계	8,234,344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 혁신과 기술 가치 창출	지역혁신 기반 글로벌 융복합 연구체계 구축	6,422,710	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② 대학이 주도하는 집단연구체계 고도화
	지속 가능한 연구 경쟁력 확보	9,560,051	①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②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포닥 등 연구원) ③ 미래 우수 연구인력(석박사) 육성 지원

미션	성과목표	2026년 예산액(안)	주요 추진과제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가치 창출 선도	3,886,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수요 중심 산학협력 성과 제고 ② 산업수요기반 우수 IP창출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③ 기술 기반 창업 플랫폼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소계	19,868,901	
대학-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동행 및 협력 활성화	786,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과 지역간 지식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② 지역 현안 의제 발굴 추진 ③ 지역 현안 공론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
	지식 나눔을 통한 지역·글로벌 상생 사회공헌 추진	1,955,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사회 지식나눔 추진 ③ 재외동포청 연계 글로벌 상생 가치 창출 ④ 글로벌 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추진
	소계	2,741,413	
지속 가능한 대학운영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경영과 재정 안정성 강화	2,856,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기반 대학운영 총괄 성과관리 추진 ② ESG 대학경영 및 관리체계 강화 ③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소통·혁신 행정 구현 ④ 미래 대학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미래형 캠퍼스 혁신	21,986,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린캠퍼스 추진 ② 교육연구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③ 안전하고 효율적인 캠퍼스 운영 ④ 미래 교육연구 환경 디지털 전환 추진
	소계	24,842,621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대학운영시행계획안에 총장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 기본적으로 4개년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있고, 해당 내용은 총장 공약을 반영해서 완성되었음.

세부 사업이 큰 틀에는 교육, 연구, 사회공헌, 운영체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이번 안에는 교육 쪽의 예산은 몇 %가 증액되었는지 또 연구 쪽은 몇 %,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새로 총장님이 오셔서 어느 쪽에 예산을 더 쏟고 있나 알수 있는지?

▶ 보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9 제2026-10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안건요지 [보고자: 재정전략과장]

1. 제안사유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 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정원 외 외국인 포함) 등록금 동결
- 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포함) 입학금 및 등록금 동결
- 학부 장학금 규모 등록금 세입 대비 19.1%

○ 심의결과: 원안가결

1 제2026-11호 심의안건: 2026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안건요지 [보고자: 재정전략과장]

1. 제안사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예산(안)

- 성질별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74,154	248,342	25,812	10.4%
자체 재원	소 계	76,047	74,616	1,431	1.9%
	등록금 수입	63,997	62,849	1,148	1.8%
	교육부대수입 등	5,150	5,567	-417	-7.5%
	이월금	6,900	6,200	700	11.3%
의존 재원	소 계	186,191	164,792	21,399	13.0%
	정부출연금	140,021	130,905	9,116	7.0%
	보조금	39,229	32,889	6,340	19.3%
	전입 및 기부금 수입	6,941	998	5,943	595.5%
수입 대체	소 계	11,916	8,934	2,982	33.4%
	생활원 운영	6,441	4,977	1,464	29.4%
	스포츠센터 수입	2,200	1,100	1,100	100.0%
	평생교육원 수입	623	475	148	31.2%
	입시운영 등	2,652	2,382	270	11.3%

나. 세출예산(안)

-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본예산(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74,154	248,342	25,812	10.4%
인건비	103,550	101,459	2,091	2.1%
관리운영비	13,675	11,977	1,698	14.2%
학사 및 교육운영	45,074	41,289	3,785	9.2%
교육인프라 구축	52,724	40,737	11,987	29.4%
우수인재 양성	48,396	44,509	3,887	8.7%
평생교육지원	697	671	26	3.9%
예비비	1,185	1,107	78	7%
수입대체 경비사업	8,853	6,593	2,260	34.3%

■ 주요질의 및 답변

질의 사항	제언 및 답변사항
단과대 자율예산의 변동이 있는데 차이가 날 만큼 어떤 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출연금 사업 편성 및 종료로 인한 변동이 있음. ▶ 자율예산은 총 60억 범위 내에서 재학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초과공간사용료 감액과 인센티브까지 적용된 결과임.
근속 포상이 교원/직원/조교에 차등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 재무경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차후 검토. ▶ 어느 쪽을 인상하는것도 방법이지만 어느 쪽을 삭감하여 금액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 또한 기록으로 남겨 차후 검토.

전입금 수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 30호관 건립 사업을 위해 전입금이 늘어나게 됨.
국비출연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교육장비 및 연구기자재 확충, INU 슈어랩 예산이 감액되었고 신입교원 연구지원은 증액된 거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 집행점검 결과 교육장비 및 연구기자재 확충, INU 슈어랩 예산은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신입지원 연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함.
융합자유전공대학 학생들이 각 학부(과)로 배정되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 융합자유전공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공 진입이 1월에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함.
기초학문지원 육성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국비출연금을 편성해야 평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확대된 것임.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어떤 요인때문인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 전기·기계·미화 용역비 증가, 안전사고 예방 인력 증원 등이 반영된 결과임.

○ **심의결과: 원안가결**

폐회선언

-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5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함